
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
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신청자”란 법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가 제3호에 따라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임”을 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신청서 및 보안대책,”을 “신청서, 보안대책 및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“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전단 중 “제7조제1항 내지 제3항”을 “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서식을 별표 1로 하고, 별표 1 중 “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는”을 “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“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증”을 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자란 중 “사업자 등록번호”를 각각 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